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2021년 7월 27일, 2022년 7월 28일 시행)에 따라 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상 한도 금액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전문적·체계적인 자동차손해배상 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사회 정수를 증원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2021년 7월 27일, 2022년 1월 28일 시행)에 따라 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정수를 법률과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한 구상 강화(안 제10조)

- 무면허 운전사고, 음주운전 사고,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회사등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삭제하여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구상할 수 있도록 강화

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사회 정수 증원(안 제11조의3)

- 전문적·체계적인 자동차손해배상 정책 수립·지원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사회 정수를 증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9. 28. ~ 11.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의3제1항 중 “8명”을 “12명”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0조(구상금액) 법 제29조제1항</u> <u>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u> <u>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u> <u>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실제로</u> <u>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u> <u>총액을 말한다. 다만, 보험회사</u> <u>등이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또</u> <u>는 공제금의 총액이 다음 각 호</u> <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u> <u>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u> <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u> <u>액을 말한다.</u> 1. <u>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 사</u> <u>고 1건당 300만원. 다만, 법 제</u> <u>29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u> <u>한 경우에는 사고 1건당 1,000</u> <u>만원으로 한다.</u> 2. <u>재물의 멸실(滅失) 또는 훼손</u> <u>의 경우 : 사고 1건당 100만원.</u> <u>다만,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u> <u>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고 1</u> <u>건당 500만원으로 한다.</u>	<u><삭 제></u>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이사회 구성) ① 법 제39조의5제5항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는 원장 1명, 이사 <u>8명</u>(이사장 1명을 포함한다) 이내로 구성한다. ② ~ ④ (생략)	제11조의3(이사회 구성) ① --- ----- ----- ----- <u>12명</u>----- -----. ② ~ ④ (현행과 같음)